

근 담 보

근 질 권 설 정 계 약 서

(예 * 적금용, 동산용, 유가증권용)

팀 원	팀 장	본부장

본인 및 자서확인

년 월 일

*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'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'과 계약서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, 굵은선 으로 표시된 란(당사자란 제1조 및 계약서 각면)은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

채권자겸 근질권자	주식회사 누리편당대부	(인)
주 소	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2길 15	
채무자		
주 소		
근질권설정자		
주 소		

위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근질권 설정 계약을 맺습니다.

제1조 근질권의 설정

근질권설정자(이하 "설정자"라 합니다)는 대부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, 이 계약서의 "담보목적물 목록"에 기재된 "담보목적물"에 대하여 "담보목적물"이라 합니다)에 다음 내용으로 근질권을 설정하고, 채권자 앞으로 그 담보목적물의 인도 절차를 마쳤습니다.

1. 피담보채무의 범위

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두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, 설정자는 그 가운데 **특정 근담보**에서 정한 채무(이자, 지연배상금 기타 부채채무를 포함합니다)를 담보하기로 합니다.

특정 근담보		
채무자가 채권자(본지점)에 대하여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		
년 월 일자	약정서,	년 월 일자 약정서

2. 담보한도액 등

가. 담보한도액

<input type="checkbox"/>	금 십억 원	원
<input type="checkbox"/>	국법화. 금	

나. "가"호의 담보한도액을 외화로 정한 경우, 원화환산에 적용할 환율은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변제금을 수령할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로 적용합니다

3. 근질권 결산기

채권자는 근질권 결산기를 정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, 설정자는 **2년 2개월**에서 정한날을 결산기로 하기로 합니다.

지 정 형		
년	월	일

자 동 확 정 형		
정하지 아니합니다.		
이 경우 계약일부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저당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,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,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. 다만, 5년이 경과 할 때까지 설정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일부 5년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.		